



번뇌는 눈 녹듯 사라져

↙ 항상 일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수행에는 관심이 없지 않은가 하고 의아해 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법성행 보살처럼 태고사의 구암 신도들은 공부와 일, 지계행이 그대로 수행임을 잘 알고 있다. 큰스님은 수행자의 근기와 인연을 보고 그에 맞는 수행법을 지도한다는 것. 즉 '관세음보살' 또는 '지장보살' 정근, 천수다라니, 절하기, 참선 등 다양한 행법을 그때 그때마다 적절하게 일러준다. 보통 관음정근은 하루 3만독, 절은 하루 1000배, 천수다라니는 하루 300독을 기준으로 한다. "매일 이렇게 쉬지 않고 정진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큰스님의 경험담이다.

큰스님은 불자들에게 관음정근이나 절하기를 주로 시키지만, 근기와 인연에 따라 '관세음보살이 누구인가?' 나 '이뵈고?' 를 찾는 참선을 권하기도 한다. 평생 새벽 1시간 일어나 참선하시는 큰스님은 기도, 참선, 간경, 주력 수행을 통해 일념을 이뤄 깨침으로 나아가도록 방편을 시설하고 계신 것이다.

공양시간이 끝난 후, 이번에는 '도천 큰스님의 분신'이라 불릴 정도로 정진에 열심인 상좌 정안 스님을 뵈었다. 역시 그 아버지께 그 아들이었다. 신도들로부터 '이 세상에 없는 효자스님'으로 칭송받는 정안 스님은 1968년 10월 보름 입재 후 40년동안 기도정진을 멈추지 않은 놀라운 정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3년마다 1만일 기도계절을 하고 해제하는 바로 당일, 결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고사는 사시사철 기도정진이 끊어지지 않는 도량이다.

"1만일 기도정진이 끝날 때마다 점점 깊고 넓어지는 마음을 실감합니다. 삼생(三生: 과거, 현재, 미래)과 사생(四生: 태, 란, 습, 화로 태어난 생명) 육도(六道: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세계가 실재하지만, 그것 역시 마음 안의 세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삼라만상은 중생의 업이 나타난 것입니다. 업따라 인연따라 펼쳐지는 생멸하는 삶은 '살아있는 꿈'이지요."

"큰스님께 공부 점검을 자주 받으십니까?" 하고 여쭙니,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데 뭘 묻고 답할 게 따로 있나요" 라고 하신다. 그야말로 사제기간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을 엿볼 수 있는 자신있는 표현이다.

정안 스님의 정근시간은 새벽 4~6시, 오전 9시 반~12시반, 오후 2~4시, 저녁 6시반~8시반 등 하루 8시간. <천수경>과 <금강경> 독송, 지장보살 정근, 축원 등으로 진행되는 기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어진다.

1967년 전남 담양군 금석면 보광사에서 큰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이렇게 회상한다.

"옛날, 옛날, 옛날의 큰스님. 진짜, 진짜, 진짜 큰스님이란 느낌이 들었지요. 큰스님은 평생 천수다라니로 수행한 수월 큰스님의 기풍을 그대로 잇고 있습니다. 보살도와 일, 참선과 계행이 어긋아 하닌 수행입니다."

큰스님은 '공부와 보살행과 계행 등 3가지 흐름 속에서 도를 닦으라'는 의미의 '도천(道川)'이란 법명을 받았는데, 흥미롭게도 속명 역시 같은 이름이다.

름이다. 평생 계행을 지키고 일하면서 참선하는 큰스님의 숨은 면모를 상좌스님의 설명을 통해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다.

한국 근대 선종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은 수월 스님이 보름달이라면, 남방의 도인 해월 스님은 반달이요, 덕숭총림을 세운 만공 스님은 초생달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깨달음의 깊이는 선문답을 능통하게 하고 설법을 잘 하는 것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자비' 역시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요, 직접 관음보살이 되는 수밖에 없다. 경허-수월-묵언 스님의 법맥을 이은 도천 큰스님의 기풍은 말없이 참선하며 보살도를 행하는 데 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마침, 선방 공사를 감독하기 위해 큰스님이 조실방에서 나오시자, 동행하며 다시 법문을 청했다.

"큰스님, 조팔일을 맞아 불자들을 향해 법문 한마디 해주십시오."

"내가 왜 큰스님이야, 이 절 머슴이야."

"큰스님, 한 마디라도 들려주세요."

"난 아는 게 없어. 일밖에 몰라."

끝내 한 마디도 '아는 소리'를 하지 않는 일구(一句: 깨달음의 한 마디)에는 어떻게 잔머리를 굴려볼 방법이 없다. 마치 유마 거사의 '우뢰와 같은 침묵(默如雷)'을 듣는 느낌이랄까.

큰스님은 결코 사족(蛇足)을 단 적이 없지만,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히 살면 그게 바로 '평상심(平常心: 平常心是道: 망상·분별 없는 평상심이 도이다)'의 수행이 되는 도리를 신도들에게 설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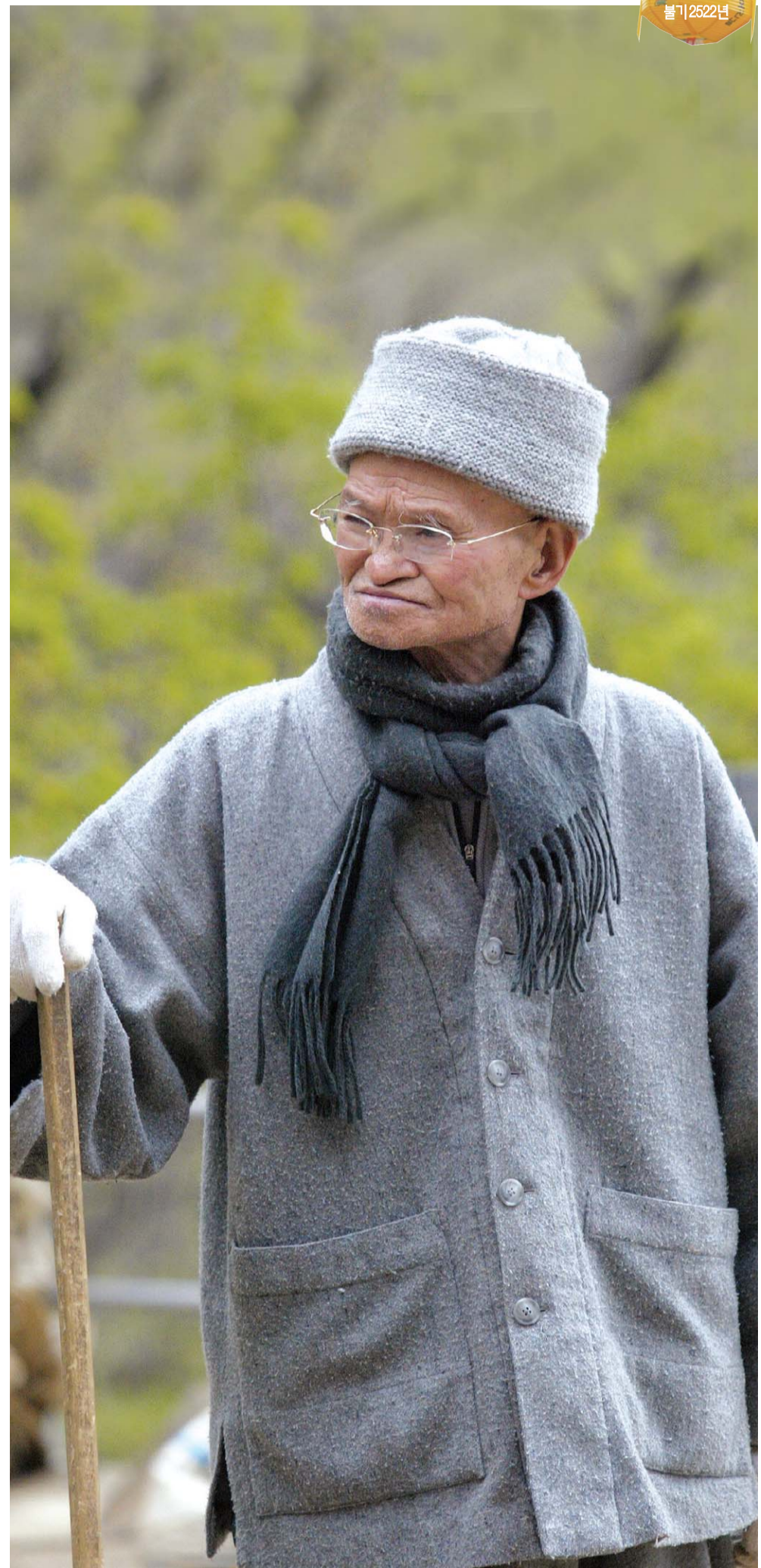
"그저 일에 집중해서 온 정성을 모두어 일해 봐. 탐진치 3독심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온갖 번뇌를 여의는 것을 느끼게 된다구. 그러다보면 상(相)내는 마음이 사라져, 부지불식간에 상을 버리는 것이 불교의 처음이요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내가 있다'는 헛된 집착이 '상'인데 그 상으로 3독심이 생기고 그 3독심으로 무수한 번뇌가 싹트는 거야. 그러니까 하심(下心)하는 것을 비굴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돼."

큰스님이 공사를 지시하는 도중, 천성산 조계암 무문관에서 2년간 폐관(閉關) 정진을 하고 나온 한 수좌스님이 큰스님께 인사를 올리며 지도·점검을 부탁한다(왼쪽 사진). 수좌와 함께 조실방으로 들어가시는 큰스님께 하직인사를 하고 손을 잡으니, 큰스님께서 가만히 손을 꼬옥 잡아주신다. '불교 일 하더라도 정진을 놓치지 말라'는 말없는 가르침이 전해진다.

"까마귀는 까마귀 소리를 내고, 까치는 까치 소리를 내지. 인간이 환골탈태(換骨奪胎) 하지 못하고 까치 소리를 내서는 안돼."

언젠가 큰스님이 한 거사에게 화두처럼 던진 질문이 다가온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사람다운 소리를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살 것인가. 대문산을 내려오면서 어느덧 이 질문이 화두가 되어 가슴에 박힌다.

금산/글=김성우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까마귀는 까마귀 소리를 내고
까치는 까치 소리를 내지
인간이 까치 소리를 내서는 안돼”



불기2552(2008)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대한불교조계종은 「포살 및 결계에 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2552(2008)년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본종 모든 스님들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계신고

- 신고 일: 불기 2552(2008)년 5월 10일(토, 음력 4. 6) ~ 5월 19일(일, 음력 4. 15)
- 신고장소: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다만 공할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에서 신고함.)
- 신고방법
 - 본종 소속 사찰의 주지는 <시행령 별첨 서식1>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에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을 기입하여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함.
 - 본종 관장 하에 기관 및 단체(선학원, 대각회 등 법인소속 사찰 포함)의 거주승과 기타 수행처에서 거주하고 있는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2>의 결계신고서(개인용)를 작성하여 결계 일 전 10일부터 결계일까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지역 교구본사에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결계신고를 함.
 - 동국대학교 및 중앙승가대학교의 소임자 및 학인들은 <시행령 별첨 서식1>의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 단체용)를 작성하여 결계 일 전 10일부터 결계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의 방법으로 교육원에 결계신고를 함.
 - 6월 이상의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 활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스님과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출국한 스님은 <시행령 별첨 서식3>의 해외 출국(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신고함.

2. 포살

- 포살참여 의무
 - 본 종 스님(예비승을 포함한다)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 안거 중에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각 교구본사 관할 공할의 주지는 반드시 소속 교구본사의 포살에 참여하여야 함.
- 포살참여 예외
 - 가. 승남 30년 이상, 연령 60세 이상, 법계 종사금 이상의 스님
 - 나. 결계 기간 중 1월 이상 입원 중인 스님

- 다. 6월 이상 해외 연수와 유학, 해외 포교활동 중인 스님
- 라. 결계 기간 중 1월 이상 해외 공무 출장 중인 스님
- 마. 군 복무중인 스님
- * 나 ~ 마의 사유로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첨 서식6>의 포살 불참 사유서를 결계해제 일 까지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제출하여야 함.
- 포살 시행일: 교구본사에서 정하여 시행함(각 교구본사별 포살 시행일은 추후 공고 예정임)
- 타 교구 포살참여
 - 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참여하고, <시행령 별첨 서식4>의 타교구 포살 참석 확인서를 결계신고 교구본사에 포살 참여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3. 결계록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제한 (포살 및 결계에 관한법, 계단법, 승가고시법, 법계법)
 - 사미·사미니는 비구·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없다.
 - 각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 법계를 품수 또는 승서할 수 없다.
- 4. 유의사항
 - 결계신고는 접수기간 내에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시행령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서식>은 종단 소속사찰 및 교구본사에 발송된 안내책자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각 교구본사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정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011-1710]

불기 2552(2008)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